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398
----------	------

2021년 7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1. 5. 25.

2.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21. 5. 31.

4. 상정일자 :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2021. 6. 24.)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2021. 7. 2.)

- 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황보연)

-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수입계획 중 '예치금 회수'가 257억 1천 8백만 원에서 265억 4천 7백만 원으로 8억 2천 9백만 원 증가함
- 지출계획 중 '비용자성사업비'는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앵커시설 부지 매입 등을 위해 54억 6천 9백만 원에서 71.3% 수준인 38억 9천 8백만 원 증가한 93억 6천 7백만 원으로 변경하고,
- '예치금'을 270억 9천 3백만 원에서 11.3% 수준인 30억 6천 9백만 원 감소한 240억 2천 4백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2398호,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1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

2.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

(1) 제안이유

-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함

(2) 주요내용

- 가. 신규사업 편성(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앵커시설 부지매입)을 위해 비용자성 사업비를 36억원 증액하여 당초 대비 20% 초과 변경하고 예치금을 36억원 감액하여
- 나. 지출계획 비용자성 사업비를 93억 6,700만원, 예치금을 240억 2,400만원으로 최종 변경하고자 함

다. 지출계획 변경내용

〈표 2-1〉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A)	1차 변경	2차 변경	3차 변경(B)	증 감(B-A) (증감률)
계	32,572	32,572	33,401	33,401	829
비용자성사업비	5,469	5,549	5,767	9,367	3,898(71.3%)
기금관리비	10	10	10	10	-
예치금	27,093	27,013	27,624	24,024	△3,069(11.3%)

- 1차변경 : 우당이회영기념관 조성 8,000만원 편성(예치금 8,000만원 감액)
- 2차변경 :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증가액 지출계획에 반영
 - ▶ 비용자성 사업비 2억 1,800만원 증액 : 집수리 코디네이터 사업 편성
 - ▶ 예치금 6억 1,100만원 증액
- 3차변경 :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앵커시설 부지 매입비 36억원 편성(예치금 36억원 감액)

※ 비용자성사업비 당초 계획대비 20% 초과 변경

3. 검토내용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입계획의 변동 없이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의 세부사업중 **여유자금예치** △36억원을 감액하고, 다른 정책사업인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중 세부사업인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에 36억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 하고자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
- 관련 법령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
 - 관련 기준은 예치금이 포함되는 재무활동이라도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정하고 있는 바,
 - 동 기금의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①**재무활동**이 당초보다 △11.3%, △30억 6,900만원 감소하여 의회의 의결사안에 해당되지 않으나, ②**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는 당초보다 71.3%, 38억 9,800만원 증가하게 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

〈표 3-1〉 도시재생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백만원, %)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당 초 (A)	서울시경 사 체 변 경		기금운용 변경(안) 3 차 (D)	증 감 (E=D-A)	증 감 륜 (F=E/A)
		1 차 (B)	2 차 (C)			
계	32,571	32,571	33,400	33,400	829	2.5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5,468	5,548	5,766	9,366	3,898	71.3
도시 재생 활 성 화	5,468	5,548	5,766	9,366	3,898	71.3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	3,833	3,913	3,913	7,513	3,680	96.0
주 민 역 량 강 화	1,635	1,635	1,853	1,853	218	13.3
행정운영경비(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10	10	10	10	-	-
기 본 경 비	10	10	10	10	-	-
기 금 관 리 비	10	10	10	10	-	-
재무활동(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27,092	27,012	27,623	24,023	△3,068	△11.3
보 전 지 출 (재 생 정 책 과)	27,092	27,012	27,623	24,023	△3,068	△11.3
여 유 자 금 예 치	27,092	27,012	27,623	24,023	△3,068	△11.3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정책사업인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중 도시재
생기반시설 조성은 성북구, 강서구 2개소에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을 추진하고자 36억원을 지출하여 앵커시설 부지 매입을 하는 것으로
 - 지난 5월 25일 제출된 '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
개발특별회계의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에도 유사한 편성 내용이
확인됨

〈표 3-2〉 사업내용이 유사한 편성 현황

의안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회계	도시재생기금	도시개발특별회계
세부사업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사업대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북구 장위전통시장 ■ 강서구 화곡중앙골목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북구 장위전통시장 ■ 강서구 화곡중앙골목시장 ■ 성동구 용답상가시장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위전통시장 일대 앵커시설 부지 매입 17억원, ■ 화곡중앙골목시장 일대 앵커시설 부지 매입 19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9,100만원, ■ 설계 및 공사비 8,500만원

- 기금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의 사업내용이 동 기금의 설치 근거인 관련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에 해당되어 특별회계 세출사업과 유사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관련 기준은 기금사업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바,
- 기금의 사업내용(부지매입비)과 특별회계의 사업내용(설계 및 공사비, 운영비)이 차이가 있어 편성하지 않을 명분은 없으나 결과적으로 대상지와 사업효과가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기금과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편성·지출하는 것은 최소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부대의결 : 「생략」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2021. 7.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2398
----------	------

제출년월일 : 2021년 5월 25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1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사업 편성(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앵커시설 부지매입)을 위해 비용자성 사업비를 3,600백만원 증액하여 당초 대비 20% 초과 변경하고 예치금을 3,600백만원 감액하여

나. 지출계획 비용자성 사업비를 9,367백만원, 예치금을 24,024백만원으로 최종 변경하고자 함

다. 지출계획 변경내용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A)	1차 변경	2차 변경	3차 변경(B)	증 감(B-A) (증감률)
계	32,572	32,572	33,401	33,401	829
비용자성사업비	5,469	5,549	5,767	9,367	3,898(71.3%)
기금관리비	10	10	10	10	-
예치금	27,093	27,013	27,624	24,024	△3,069(11.3%)

- 1차변경 : 우당이회영기념관 조성 80백만원 편성(예치금 80백만원 감액)
- 2차변경 :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 증가액 지출계획에 반영
 - ▶ 비융자성 사업비 218백만원 증액 : 집수리 코디네이터 사업 편성
 - ▶ 예치금 611백만원 증액
- 3차변경 :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앵커시설 부지 매입비 3,600백만원 편성(예치금 3,600백만원 감액)

※ 비융자성사업비 당초 계획대비 20% 초과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재생정책과 재생정책팀 김주현 (☎2133-8615)